

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(불인정)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(인)

(의사상자 인정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) 귀하

의사상자 인정신청 내용				
신청인	구조행위자와의 관계			
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구조 행위자 (심사 대상)	구조행위일		년	월 일
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의사상자 인정결과				
인정기관	보건복지부	심사위원회	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(년 월 일)	
인정결과	불인정			
불인정사유	[]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[] 구조행위자의 생명·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[]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[]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[]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[] 구조행위와 부상·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[]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 []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에 미해당			

안내 사항

위의 의사상자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